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CP1.5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논리를 반박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초구 서초동 1572-12번지 명지빌딩 4층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천리안 : m321 나우누리 · 하이텔 : minbyun7

CP1.5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대옹논리를 반박한다-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전면 무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책을 내면서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은 국회로 숨어들어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 국민은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에게도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여 그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날치기 소식을 듣고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듯 참으로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갈등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작은 힘을 바쳐 온 우리 변호사들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맞이하여 날치기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농성을 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날치기를 지휘한 신한국당대표는 “자랑스럽고 다행한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은 국민이 오해를 했다거나 엄단하겠다는 등 국민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느낀 것은 분노였고 그 다음에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법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과업을 한 노동조합지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집회와 시위를 경찰이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필칭 국민이 주인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은 왜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을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가권력이 절대 다수국민의 뜻을 오히려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겠다고 나선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 건설한 우리 국민, 안기부를 앞세운 군사정권의 정보정치와 인권유린에 맞서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만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으로부터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날치기해간 그들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우리 변호사들의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언론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의 끝없는 거짓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 국민은 날치기악법들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사태를 바로잡을 권리와 책임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에 담긴 내용이 충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진실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볼수록 날치기법안들은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날치기당하는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고 권력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더 이상 받지 말고 떳떳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글은 그동안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한 토론과 고민의 결과를 몇 사람의 회원이 대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들에 나타난 의견은 우리 민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김민웅선생님께서 보충해 주셨고 최장집 교수님께서는 귀한 글을 읊겨 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시현 박사와 김리나씨가 자료번역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쓰고 편집에 참여해 준 여러 회원들과 특히 실무간사들의 노고가 컸음을 밝혀둡니다.

1997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목 차

책을 내면서 / 2

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

▶ 김민웅(목사·在美칼럼니스트) / 7

거꾸로 가는 문민시대 ▶ 최장집 / 15

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 ▶ 이백수·안상운 / 18

김영삼 정권의 '개혁포기 선언' : '안기부법 개악내용'과 그 '폐해'

▶ 장주영·정연순 / 27

'날치기' 노동법 '개악내용'과 문제점 ▶ 김선수 / 39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법성과 그
의미 ▶ 조용환 / 58

부록

파업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원칙 ▶ 조용환 / 81

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

김민웅(목사 · 在美칼럼니스트)

1. 이번 사태의 본질

여당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합동 작전으로 단독 기습처리한 「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상적으로는 (1) '권력의 오만과 이에 대한 국민운동적 저항'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미래, (2) '총체적 경제위기의 해결을 앞세운 고통분담의 일방적 강요'와 관련한 생존권적 차원의 분노, 그리고 (3) '재집권 전략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기도'의 연장선위에 있는 대선정국의 폭풍으로 압축된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서로 얹혀서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되고 있으면서도, 첫번째는 범시민운동의 파상공세적 결성, 두번째는 노동운동의 주도권 변화와 정치력 강화, 셋째는 공안정국의 분할통치적 파괴력에 맞서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야당간의 연대투쟁으로 그 주요한 세력적 측면을 드러내 가고 있는 셈이다. 즉 현정세의 발전과정에서 이 세종류의

축이 김영삼 정부와 그 지지세력을 상대로 하여 하나의 「총괄적 연관체계」를 구성하는 가운데 각기 독립적 지도부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있는 역할을 차별성있게 감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역학구도로 보아 기존의 「권력과 자본의 구조적 동맹」 대(對) 차츰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시민·노동·야당 연합전선」의 대치,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는 본질적으로 「동맹세력」에 기울어 있는 다수의 기회주의적 언론과 「연합전선」을 지원하는 소수의 양심적 언론이 배치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세의 전개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날치기」로 표현되는 「기습」이라는 정략이 파괴한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주요관건으로 등장했고, 2차적으로는 두가지 법안의 「내용적 본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은 「그 법의 내용적 본질이 절차적 정의(正義)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절차는 좀 문제가 있으나 내용은 그리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나,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라며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방식은 모두 사태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앞의 주장은 절차만 제대로 밟았으면 이런 식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치기술상의 미숙만을 질타하면서 본질적 모순을 은폐, 옹호하는 궤변적 논리가 되며, 뒤의 것은 그 비판적 논점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변칙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두 주장은 변칙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공개적인 논의와 법률적인 심의, 윤리적 토론

의 정당하고도 충분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민주적 기본인권을 부인하는 「독소적 본질」이 그대로 폭로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목하는데서 비로소 극복된다. 한마디로, 내용이 몇몇하지 못하기에 기만적인 방식 이외에는 이 두가지 법안이 정치적, 법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실로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직후 사용한 용어대로 「여당단독통과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자기존립과 유지를 위해 「독소적 기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지 세력과, 그로 말미암아 억울한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간의 「기본권적 공동선(共同善)」을 건 일대 결전(決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보다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것은 탈냉전시대의 세계사적 요구와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동반되는 도전을 정의롭게 소화할 수 있는 「미래형 국가체계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시대착오적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이번에 스스로들 별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자행한, 쿠데타에 준하는 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 군부정권과 유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냉전적 국가형태」와, 이전과는 구성요소의 결합구조가 달라진 국제경쟁력의 기초를 근본에서부터 허무는 「노동 억압적 후진경제」를 고수하려들므로써 우리를 낙오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정세의 본질적면모는 「향후 우리가 21세기적 진로의 활력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세기적 한계에 갇혀 주저 앉아버리고 마는가」에 있다.

즉, 이 결전의 결과는 단순히 어떤 한 직접 당사자 집단이나 계층의 정치경제적 운명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진운을 결정하는 전환점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분단체제적 냉전형 국가' 대(對) '통일지향적 미래형 국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기부법(내지 국가보안법)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면서 자본축적방식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분단체제적 냉전형 국가의 양대(兩大) 축」이며, 이는 공권력으로 포장된 「국가폭력」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국가체제가 구사하는 '억압과 착취와 폭력', 이 세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3위 1체제적 구조'로 성립되어 지난 시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면서 일부 특정세력과 지역출신 그리고 계층에게 권력, 자원, 지위를 독점적으로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를 이어 「특권화」 시켜 왔다. 이것은 어느새 체제적 본성으로 심화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드러난 권력의 오만은 집권세력의 성품인 동시에 그 특권적 위치에서 당연히 연유되는 결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특권적 군림을 보장해 주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서 남북대결의 냉전형 정치문화와 이를 방어할 법적 장치, 군사적 상황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그간 권력의 위기에 대한 도전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수없이 대응했던 일련의 사건을 비롯해서, 노동운동이 '빨갱이'로 매도되었던 과거나,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공권력의 '이념투쟁으로 변질조짐 운운' 발언들은 모두 그러한 맥락의 필연적인 소산이라 할 것이다.

한국경제, 즉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이러한 국가체제의 기능은, 특권적 경제정책에 의해 재벌의 형태로 집중성장한 자본의 의사대로 움직여 주고 이에 저항하지 않는 저비용의 노동을 언제 어디서라도 확보하는 정치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이른바 '길들여진 또는 순차된 저렴한 노동자 집단'을 국제노동시장에서의 제1차적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폭력의 후원하에 노동강도를 고단위로 높혀 단기적인 폭발력을 발휘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 대목은 자본주의적 산업구조가 미약했던 과거의 시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이 시기의 정책이 지니고 있는 여러 모순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빈궁한 형편이 처한 발전단계상의 불가피함을 관대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경제체계가 이제는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된 정치적 부패와 사회윤리적 타락을 양산한 전근대적 특권구조에 타성적으로 의지하거나 저비용의 노동가격을 앞세워 21세기적 사회의 모형을 창출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고와 자세가 당연함하게 통용되었던 우리의 경제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상품의 질」 이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특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갖가지 관료적 규제의 해체, 국가적 규모의 과학, 기술개발투자,

창조적 정신을 기르는 반권위주의적 교육, 지대와 이자율등 각종 투자비용의 경감 그리고 고용안정과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의해 보장되는 노동자의 드높은 생산의욕등이다. 특혜조치와 국가폭력의 일방적 행사로 발전 에너지를 동원했던 시기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단계에 진입해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국제경제의 미래적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권은 그대로 움켜쥐고 구시대적 관성으로 대처하려는 「권력의 무능과 기득권의 탐욕」이 우리들 모두의 발을 묶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과, 한국 자본의 국제적인 입장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에 대한 공감은 노동자 역시 깊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이 자본을 집단이기주의에 의거해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미래」로 이어지는 길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운명에도 불리한 것이 될 뿐이다. ‘반란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처지’를 재생산하는 구조 위에서 자본의 독자적 번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령 「파업의 중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의 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의 조성이 우선적 관건이며, 대립적 쌍방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의 성격이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열망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보다 중요하다.

김영삼 정부는 냉전형 국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형 국가로의

진전을 위한 과도기적 책무를 지닌 정권으로서 기대를 받았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기대의 현실성에 대한 깊은 회의로 번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어느 한 정권이나 정파에 맡길 수 없다는 「공동체적 각성과 역사적 행동의 지점」에 우리의 눈을 다시금 새롭게 뜨게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적 미래를 향한 「이행의 전략」이 부재한 사회, 아니 그것의 생산적 창출을 가로막고 남북대결정책에 따른 자원의 낭비적 소진을 정책으로 삼고 있는 힘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적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말해서, 내부적 결속과 장기적 국가이익의 안목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 앞에서 종국적으로 남과 북의 역량을 결합하여 공동의 미래를 수호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실패하면, 「민족내부의 공동체적 연대에 기초한 국제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결과로 해서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의 진통으로 말미암아 취약해진 역량으로 국제적 도전의 파고를 감당해야 하는 난감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번의 국민운동적 저항의 물결은 단지 두 법안에 대한 절차적 오류를 정치적으로 시정하고 내용적 타결을 이끌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준비」라는 점에 그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일체의 특권적 구조를 철폐하고 기본적 인권의 민주적 보장을 확립하며 민족적 연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착오적 장치들을 철거하는 가운데 과거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신바람나게 내일의 새로운 건설에 동참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노력의 역사적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집된 힘은 일정한 지점에서의 사태처리 이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를 이루는 동력으로 꾸준하게 성장해가야 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사고의 대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적 저항앞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할 준비를 하든지 양자간에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진실로, 이들이 역사의 교훈이 수없이 경고해온 불행을 겪지 않고 이러한 미래적 행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낙오와 진전 그 갈림길'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감히 단언컨데, 길게는 19세기 말의 과오와 그후 1백년의 고난, 짧게는 80년, 87년, 92년의 빼아픈 패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다름아닌 「제2의 건국운동」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음이 훗날 판명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출발의 감동적인 현장에 있다. 이것은 그래서 그저 갑자기 덮친 재앙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가는 문민시대

최장집(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1997년은 우리에게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이다. 김영삼 정부를 이용 다음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통일 비전을 제시하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불황을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과 정부를 선택할 가장 중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그런 요인을 갖지 못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권위주의에 간힌 권두회견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 남북관계, 경제불황의 심화와 같은 핵심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듣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는 권위주의적이며 대결적 승부사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 노동,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은 위압적이며 공격적이다. 그것은 국민적 지지 속에 수행된 초기 개혁몰이로부터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으로부터도 거리가 먼 자세다. 북한이 아직도 대결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월한 위

치의 낭만까지 같은 식의 냉전적 대결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정부여당이 민주개혁 입법으로 자찬해 마지 않았던 안기부법의 개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발상을 드러낸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 국민의 일정한 지지기반이 있는 야당을 정치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공간은 좁아진다.

대선과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의사는 중요할 수 밖에 없지만, 후보 선정과 다음 정권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이 최소화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일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권위주의적 권력 세습 이상이 아닐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후보 선임을 독재정치 때처럼 한 사람의 의사로 좌우하려는 시도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의 하나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하여 다음 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확립하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의 경제 불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불황 자체보다도 그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안이하고 잘못된 제세에서 비롯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노동자 세력이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 의식이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발전의 파트너로서 끌어안는 통합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의 통제와 억압의 방법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고,

구조적 개편이 요구되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도 없다. 기업과 사용자 단체들이 옛 시대의 노동관을 갖고 단견적인 인식에 집착하더라도 정부는 긴 안목에서 이를 깨우쳐야 할 것이다.

대결·독선보다 비전을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바탕 위에서 노동과 야당에 대해 진지한 포용과 화해의 몸짓을 보여줄 때에만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 경제불황,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고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함께 참으면서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

이백수 · 안상운(변호사)

I. 시작하며

아직 동인 트기는 조금 이른 시각,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용장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미 사당(私黨)으로 전락해버린 신한국당 소속 154명의 국회의원들은 오세웅 국회의장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문민’의 미명으로 포장된 거수기들의 시험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혹시나 녹이 슬지나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잠시 수백개의 텁니바퀴로 구성된 거수기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와는 달리 별 다른 잡음없이 국민 모두가 그토록 반대하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무사히 통과시키고 말았다. 거수기의 작동시간은 6분 10초. 이 기록은 현정사상 또 하나의 신기록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김영삼 정부가 자칭 문민정부로 전락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여행의 설레임으로 들뜬 학생들처럼 삼삼오오 짹을 맞추어 대열을 떠나가는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녹슬지 않은 거수기의 성능과 자신들에게 분배될 장래의 뜻을 계산하며 휴가계획을 구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중 어느 누구도 이번 사건이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이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일부 경험많은 의원들은 야당의 항의농성이나 몇몇 노동조합의 파업사태가 염려되기는 했지만 그들 뒤에는 든든한 경찰력이 있었고 아직도 먹혀 들어가는 용공의 논리가 버티고 있었기에 약간의 잡음은 오히려 협상의 미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안이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서서히 ‘역사적 사건’으로 바뀌어 갔고, 예상되었던 야당이나 노동조합의 항의보다는 ‘넥타이부대’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양식을 가진 지성인과 법률전문가들도 날치기 처리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외국의 언론과 노동단체도 이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정작 귀를 기울여야할 날치기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은 내정간섭과 홍보부족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매한 대중으로 매도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II. 날치기법률이 무효인 이유

그렇다면,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법률, 즉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과 국가안전기획부법(안기부법)은 어떠한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가 있기에 국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무효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번 사건으로 국회법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한 시민의 농담처럼

날치기 처리된 법률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처리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개정된 내용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근로자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치기 처리된 법률의 내용상의 문제점은 다른 필자의 설명으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주로 법개정 절차상의 문제점만 다루어보기로 한다.

1.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법률

하나의 법률이 법률로 존속하면서 그 효력을 유지하려면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 법률의 제·개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법률은 위 두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형상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과 다수결의 원리에 근거한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현행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률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부정하거나 과과하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는 위헌이고 이에 의해 파생된 법률 역시 무효인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의 강압과 횡포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된 의견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조정·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인 것이다. 그러한 과정속에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격앙된 어조와 다소 과장된 몸짓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결집하는 인내와 노력의 과정을 무시해 버린 의회민주주의는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의결과정은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려 국회의원 조차도 법률이 통과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는 분명 헌법의 기본이념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2. 국회법규정을 무시한 법률

또한,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통과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규정위반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이번 국회 본회의는 법정 개의시간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 72조는 본회의의 개의에 관하여 본회의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한 뒤 위 개의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

의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회본회의는 개의시간이 아닌 오전 6시경에 원내교섭단체 중의 하나인 신한국당소속위원 154명만이 출석하여 개의된 뒤 6분여만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을 의결하고 종료하였고, 회의가 종료한 이후인 그날 6시 10분경에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수석총무에게 본회의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법이 규정한 개의시간을 위반하였다.

둘째, 본회의 개의시간조차 소속의원들에게 통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 76조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의 경우, 의장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의 시간조차도 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타당 소속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알지 못하여 참석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었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세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의 소집에 의해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국회본회의의 소집권자는 국회의장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회의소집 등)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국회법 제 10조, 제 12조). 그런데 이번 본회의는 오세웅 국회의장이 김수한 국회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본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의장이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세가지 사유만 보더라도 이번 본회의는 개의과정 및 통과 절차상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것을 국회의 본회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외관상 법률로써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효임이 분명한 것이다.

III. 법학교수와 사법부의 견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신한국당이 홍보부족과 당내 의견불일치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동안 법학교수들과 보수적이라고 여겨왔던 사법부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1. 전국의 36개 대학 법과대학 교수 62명은 1997년 1월 8일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날치기 강행으로 빚어진 현 시국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수들은 위 성명서 전문에 “민주주의의는 법의 정신과 원칙들은 존중하고 준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행위원칙으로 예외없이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4년을 마감하는 시기에 또다시 등장한 날치기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다시 한번 유린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를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정당한 절차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형성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 국회가 헌법의 정신 및 국회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스스로 통법부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깊은 충격과 분노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날치기 강행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입법절차의 흔은 물론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결여한 것이었다. 여당의 의원총회를 통하여 불과한 법률개정안을 대통령이 무슨 수로 법률로 공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날치기안이 어떻게 법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여기서 문민정부의 적법절차 유린이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으며, 입법과정의 불법성과 내용상의 문제점들은 그것을 더 이상 법률일 수 없게 한다는 점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치기 법률이 무효임을 선언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법학교수들의 견해는 뒤에 설명할 사법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뜻으로 볼수 있고, 날치기 처리된 법률이 무효인 논리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2.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 창원지방법원(문홍수 부장판사)에 이어 대전지방법원(한상준 판사)이 이번 날치

기 처리된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위 결정문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률의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내지는 헌법적 위기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위헌문제에 관하여 본안판단 이전의 적법성여부를 시비삼아 판단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거론하였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은 날치기 처리된 법률의 절차상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이번 사태를 보는 법원의 시각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한상준 판사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변형근로시간제, 집단정리해고제, 복수노조금지조항, 쟁의기간중 포괄적 대체근로허용 등은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일반적·포괄적 자유권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IV. 마치며

이제와서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와 몇몇 당직자들은 야당국회의원이 정상적인 법안 처리를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날치기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그토록 국민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러한 신한국당의 궤변을 두 가지 점에 있어 도덕적·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리다. 첫째는 노동법개정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듭 말하지만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의회민주주의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최소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야당의원의 반대가 심하여 의견일치를 볼 수 없다고 미리 단정짓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국회는 존재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진정 이번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날치기 처리된 법률이 무효라고 부르짖는 외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저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포기 선언’: ‘안기부법 개악내용’과 그 ‘폐해’

장주영 · 정연순(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전두환·노태우 정부가 물러나자 그동안 국민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오던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 혹은 제한하자는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게 되었다. 마침내 1993년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이야말로 지난 정권에 의한 공작정치의 최대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안기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안기부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의 주요골자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 소지죄, 제10조에 규정된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직원들의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김영삼대통령과 이름만 바꾼 여당인 신한국당은 자신들의 참여하에 폐지하였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내용의 안기부법개정안

을 날치기처리하였다. 김영삼정권조차 ‘개혁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리높였던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정부와 신한국당은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안기부법날치기를 감행하였을까. 북한이 식량난, 경제난으로 끼니를 잊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탈북사건까지 빈발하고 있는 요즈음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간첩이 아니라 정신이상자로 취급당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찬양고무등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간첩을 못잡는다면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한 정부여당과 안기부의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겠는가? 안기부가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인권유린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초래되고 공작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권은 안기부법을 날치기처리하면서 지난 대선때 초원복국집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던 박일룡 전 경찰청장을 국내정치를 담당하는 안기부 제1차장에 임명하였다. 결국 이번 안기부법의 날치기처리는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민의 말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김영삼정권은 개혁정권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문민의 탈을 쓴 독재정권의 길로 들어선 것을 자인한 것이다.

2. 개정조항의 문제점

가. 찬양고무 등 죄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지금까지 정권이 주장하는 논리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민주인사와 재야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대표적 조항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사실여부를 떠나서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예외없이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았다.

우리나라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였던 실례를 들어보자. 북침설을 주장해도 찬양·고무이고 ‘북한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도 찬양·고무이고 북한에 ‘깡패가 없는 이유’에 대해 토론을 해도 찬양·고무가 되었다.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은 북한의 반미활동에 동조한 행위이고 ‘남한은 세금이 많아서 못산다. 남한은 북한정권을 따라가려면 10년이 걸려도 못따라간다.’고 말하는 것도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찬양한 것으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토로하거나 술먹고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고함을 치거나 자랑 혹은 과장하여 이야기한 것도 아무런 구체적인 위험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았다.

이적표현물소지 등 죄도 마찬가지이다. 해방후 최대의 문제작으로서 수백만명이 읽은 베스트셀러이며 문단에서도 그 작품성이 높이 평가되었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태백산맥」도 공안당국의 시각에 의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작가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소설뿐만이 아니다. 「전태일평전」, 「세계철학사」 같은 책도 이적표현물이고 「말」이나 「길」지

같은 월간지도 이적표현물이며 그림이나 시, 노래도 북한을 소재로 삼거나 사회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이적표현물소지 등 죄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북한이 주장한대로 말하거나 북한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모두 이적표현물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모든 사상과 이념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연구되어 창조적인 이론이 생성되어야 할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에까지 이적표현물제작반포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1994년 여름 신공안정국이 불어닥치자 검찰은 전주 경상대에서 교수 9인이 교양교재로 공동 집필하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이라 해서 담당교수들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입건하여 그 중 일부 교수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집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5년전부터 대학생들의 교양교재로 사용되어 왔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가 공안바람이 불자 이에 편승하여 갑작스레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죄하여 한 것이다.

나. 불고지죄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위반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데 부모자식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어 사람의 근본윤리까지 해치는 대표적인 악법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조항 때문에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실을 알았던 동료 국회의원, 비서관, 가족은 물론 인터뷰를 통해 방북사실을 알았던 신문사기자도 처벌받았고 심지어 서의원이 귀국후 방북사실을 털어놓았던 김수환추기경도 처벌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

다. 1995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의원인 허인회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긴급구속하였다. 간첩 김동식을 만났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이었다. 허인회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유망한 한 정치지망생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불고지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중에 간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없어도, 혹은 정신이상자라 할지라도 일단 신고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지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성직자라도 말이다.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서로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3. 안기부법개악에 대한 정부 여당의 주장

안기부를 바롯한 정부와 신한국당은 국민의 인권상황이 1993년과 달라졌다는 이유와 함께 1996년에 있었던 간첩깐수사건, 한총련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안기부의 대공수사역량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제7조, 제10조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제한으로 고정간첩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총련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 정부 여당의 주장의 허구성

가. 인권상황이나 안기부의 수사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993년 안기부법이 개정될 당시와 지금의 인권 상황 사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또한 안기부의 수사태도에도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초기에, 안기부가 정치공작의 선봉에서 무수한 형태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로서 보다는 ‘정권’안전기획부로서의 역할에 더 치중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안기부법은 여야의 합의 하에 안기부의 수사권 중 일부를 제한하고 안기부원들의 직권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개정후 안기부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공작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안기부는 1995년 역사적인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의 연기필요성, 연기방법, 선거연기를 여론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명백한 정치개입이었고 정치공작이었다.

법개정후 안기부가 인권유린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안기부는 수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집단구타와 가혹행위, 잠안재우기 등을 자행해왔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1995년 11월 박충렬, 김태년에 대하여 구속영장상에는 간첩과 접선하여 회합통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일자와 장소 그리고 접선의 상대방, 내용이 일체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기부에 연행되어 수사관들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때리기, 집단구타, 엎드려 뻣쳐자세 엉거주춤자세취하기, 깜깜한 밤에 야산에서 웃옷을 벗기고 한참동안 서있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하루에 16시간 조사를 받으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또한 변호인 접견이 여러 차례 거부되었다. 이후 박충렬은 통신회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제 7조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1996년 9월 5일 경희대 학생인 김형찬은 수배중인 다른 사람으로 오해되어 안기부원들에게 끌려가 변호인접견요구를 거부당하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고문에 못이긴 김형찬은 이를 면하고자 난로를 껴안아 온몸에 3도화상을 입었다.

안기부에 의해 형사피의자의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접견권이 침해당한 것은 한두건의 사건이 아니다. 정수일(간수)의 경우 안기부에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하였다. 안기부는 아직도 간첩에 대하여 수사를 하기 위하여는 변호인 접견 같은 것쯤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로인해 대공사건의 경우 항상적으로 조작시비를 겪고 있으며 현정부에 들어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기부 직원만 300명에 이르고 있다. 몸에 지녀온 30, 40년된 나쁜 버릇이 과연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는가.

나. 안보를 위하여 안기부의 수사권은 강화되어야 하는가?

개정된지 불과 3년 사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다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우리의 안보에 큰 구멍이 나있고 안기부법을 개악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구멍을 메울 수

없는 상태인가?

원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세계적으로 드문 예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날치기개악이전에도 형법중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등 주요범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뿐 아니라 목적수행, 금품수수, 잡입탈출, 회합통신등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다른 사건의 2배인 20일을 보장받고 있다. 더구나 안기부는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각종 정보수집, 통신검열 등을 통해 막강한 정보수집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액수가 과악되지도 않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기껏 국가보안법 7조, 10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간첩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회피하거나 자신의 무능을 드러낸 것뿐이다. 오히려 안기부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간첩을 잡아내기 보다 진보세력, 재야민주세력, 반정부세력을 탄압하여 왔던 것이다.

신한국당은 간첩깐수사건과 한총련 사건을 예로 들고 있으나 깐수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하여 왔다. 10년이 넘는 세월이라면 1993년 안기부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이고 그때의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수사권에 제한을 받지 않던 안기부가 찾지 못했던 간첩을 수사권이 제한된 안기부는 찾아낸 것이다. 요컨대 안기부의 대공수사능력은 국가보안법 7조, 10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받는 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가 얼마나 간첩수사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총련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총련은 전대협을 기반으로 하고 전국의 대학 총

학생회를 구성원으로 결성된 공개적인 조직인데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전대협이 결성되었던 1987년경부터였을 것이고 그때는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한총련의 성향이나 활동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다.

4. 안기부의 수사권확대가 가져올 폐해

가. 공안사건조작가능성

안기부를 비롯한 정부, 신한국당은 수사권 범위확대를 뒷받침해 줄 논리로, 안기부법상 안기부가 대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간첩을 잡기위하여서는 일단 간첩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우선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시킨 후에 안기부에서 20일간의 혹독한 수사를 통하여 간첩임을 자백받고 증거를 수집하여야만 간첩을 잡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겉으로 태연하게 내세우는 이 논리가 얼마나 끔찍한 인권침해의 음모를 품고 있는지 모른다. 먼저, 이 논리는 안기부 스스로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위법한 발상이다. 안기부주장대로라면 간첩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찬양·고무하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죽치면 이에 못 이겨 간첩임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간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김삼석, 김은주 남매간첩사건

이다. 1993년 9월 김삼석과 여동생 김은주는 안기부수사관에 의하여 간첩혐의로 영장없이 불법연행되어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특히 김은주는 백홍룡의 부탁으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고 100미터 정도를 걸어오다가 연행되었는데, 후에 독일로 건너간 백홍룡이 자신이 안기부의 프락치로서 김삼석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이용되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안기부가 이러할진대, 앞으로 수사권이 확대될 경우 과거 우리사회에서 빈발하였던 각종 조작사건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나.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강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이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걸린 사람들도 대부분 정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온 학생·노동자·재야운동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 제7조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이에 대한 수사권이 회복된 안기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세력·진보세력·반정부세력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당한 시각에 정권의 이해에 부응하는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일상에서 아주 은밀히 국민들의 생각과 말을 감시·통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을 수사한다는 명목하에 재야단체와 학원에 대한 사찰과 인권유린을 계속하면서 또다시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우려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

날치기개악 이전에도 안기부는 장기간의 구금속에서 변호인접견권 보장, 영장주의 등 형사적법절차를 위배하여 왔다. 안기부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이다보니, 안기부의 구성원, 조직, 체계, 예산, 활동내용 등 모든 것이 비밀이고, 안기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동시에 외부로부터 아무런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안기부에서 벌어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과 탈법행위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 진상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여 왔다. 수사권이 확대된 안기부가 제2의 박종철을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이미 1996년에만 박충렬, 김태년, 손병선, 김형찬 등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온갖 가혹행위를 받아야 했던 사례가 있다.

5. 맷음말

안기부는 한총련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묘사한 비디오를 만들어 예비군훈련장에서 상영하였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왜 수사권을 행사하면 안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판사가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증거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면 증거나 소명자료를 더 구하여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안기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단지 한총련사건 가담학생의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생각

과 사상까지 잣대질하여 빨간 칠을 해버리는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쉽게 무시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반면, 안기부는 북한잠수함이 언제,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수집에 있어 수준이하의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이를 이용하여 민주세력, 양심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 수사권을 회복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은 각종 인권유린과 정치사찰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극도로 억압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보장의 역사를 되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날치기노동법’의 ‘개악내용’과 문제점

김선수(변호사)

1. 머리말

▶ 날치기로 개정된 4개의 노동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 날치기노동법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지금 근로기준과 노동기본권을 1950년대 한국전쟁때 만도 못한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노동법 ‘개정’작업이 여러 번 있었다. 19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안이 있었고 노동부 자문기구이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1994년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의안을 마련하기도하였다. 또 이번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공익위원들이 공익안을 만들어 제안하였으며, 정부는 공익안보다도 더 재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정부안을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이 모든 개정안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더 재벌의 안에 가깝게 변해왔는데 날치기법안은 심지어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그래서 국제언론들도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 날치기노동법은 노동보호법(근로기준법)만을 개악한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법조차 심각하게 개악하였다. 원래 정부가 노개위를 설치하였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노동단체법의 독소조항들을 손질하면서 동시에 재벌들이 요구하는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거래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런데 날치기법은 노동단체법의 독소조항을 전혀 개정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만을 식민지시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2. 국제기구의 요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의 파기

(1) 국제기구가 개정요구한 쟁점사항

▶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개정을 약속한 조항들 ;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금지조항, 복수노조금지조항, 제3자 개입금지조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조항,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

▶ 1993년 ILO 제255차 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복수노조금지조항의

개정,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 교사의 단결권 보장,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 구속노동자의 석방, 해고노동자의 복직 등을 권고하였다.

당시 ILO의 결정내용: 1) 복수노조 금지 - “…기존의 노동자 단체가 존재할 때 제2의 노동자단체의 등록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에게 노동자들이 제한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3조 5호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제3자 개입금지 조항 - “…본 위원회는 이러한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청한다.” 3)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 “…본 위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상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학교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993년 11월 16일 한국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할 것, 노동3권 행사와 관련한 조합원에 대한 체포, 구금은 ILO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됨을 상기할 것 등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994년 6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 필수적 서비스가 아닌 사업에 대한 긴급조정과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조항의 개정, 행정관청의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 조항과 업무조사권 조항등 노동조합의 자

주적인 운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의 개정, 노동법 개정을 더 이상 연기하기 말 것을 권고하였고 1995년에도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의 체포구속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국제연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1995년 5월 한국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부는 노동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였고,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노동관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노동조합 결성권과 관련된 제약들이 규약 제8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본다. 특히 방위산업체 노동자 등에 대하여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과 관련된 규제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노동자들의 행위가 합법적 인가를 판단하는 데 당국만이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높이 존경받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지만,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문 종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문화적 전통을 내세우는 것을 위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여러 해고소식과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규약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및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 정부가 즉

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다른 집단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 1995년 8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제3자개입금지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 1996년 3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제출한 특별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한국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러나 날치기 노동법은 국제기구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2)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문제

▶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은 여전히 완벽하게 봉쇄되고 있다. 정부는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복

수교원단체를 인정하면서 그것도 개선이라고 생색을 낸 다음, 국회제출과정에서 그 법안을 슬쩍 빼버리고 말았다.

▶ 1989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역군인·경찰·교정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1994년 노동관계법 개정연구회의 개정건의안에도 경찰·소방·군인·안기부 직원 및 유사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를 자유로이 설립하도록 한 바 있다.

▶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낮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부조리와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도 교원의 단결권 인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소한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무원은 19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노동조합법안 수준으로 단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철폐문제

▶ 날치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한다는 간판을 내세운 다음 부칙에서 상급단체는 2000년부터, 단위노조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설립을 인정한다고 정하였다. 이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1997년부터 인정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몇번이나 연기했던 현 정권의 과거를 생각하면 2000년에 가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 복수노조 금지는 상급단체의 경우든 단위노조의 경우든 자주적 단결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또 ILO 제87호 조약 제2조 “노동자는…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가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도 위반된다.

▶ 복수노조는 당장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이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날치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존재근거를 박탈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0년부터 복수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보다는 2000년까지 민주노조를 모두 해체시켜 버리겠다는 음모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부당한 것은 이미 태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의 출생신고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제3자 개입금지조항

▶ 날치기법은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이 조항은 현재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영권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5) 직권중재조항의 유지

▶ 날치기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으로 하고, 필수공익사업을 철도 및 시내버스운송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공급사업, 의료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으로 하여,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직권중재를 하게 하면서,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15일간 재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직권중재를 허용하는 국제기준에 비하여 훨씬 넓은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직권중재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6) 노동조합의 활동과 업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간섭권 유지

▶ 날치기법은 노조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임시총회소집요구를 거부하거나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시총회소집권자

를 지명하는 조항과 노조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업무조사 조항을 유지하였다. 업무조사조항은 과거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에 정하여 더 강화하였다.

▶ 노조의 임시총회소집권자를 행정관청이 지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해 온 이 조항을 폐지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바로 소집권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업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도데체 노동부장관이 노조를 '지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7) 정치활동금지조항

▶ 날치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법들 때문에 노동단체는 여전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재벌은 온갖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노동조합만은 철저히 금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 이중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뿐 아니라 위에서 본 정치관계법의 조항들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3. 노동단체법의 개악

날치기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위협하고 활동을 옥죄는
독소조항들을 신설하고, 많은 조항들을 개악하였다.

(1)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

▶ 날치기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2002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 기업별 노조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며 법률을 통하여 국가가 간섭할 일이 못된다. 대법원도 노사가 자율로 정한 전임자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 정부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진국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선진국들은 기업별 노조체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갖고 있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개별 사용자가 지급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각 사업장의 직장평의회 근로자위원은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가 겸임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다. 파업도 있고 전임자 임금도 지급하는 독일은 선진국이 아닌가.

(2)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

▶ 날치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노동조합이 그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 정부는 소위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국제기준이라고 주장하나, 선진국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파업기금이나 정부의 실업보험,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것이 선진국의 실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주종을 이루고 근로자의 생계 원천이 임금뿐이므로 무턱대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쟁의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다.

(3)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 문제

▶ 날치기법은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유니온 샬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내에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고 쟁의행위로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는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지금의 규정을 크게 바꿔 대체근로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또 파업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대립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이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

▶ 날치기법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근로자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해고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 현행법상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노위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절차일 뿐 이므로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 조차 담보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유리할지 사용자가 유리할지는 물을 필요도 없다.

▶ 위 규정은 노동단체법상 근로자 개념을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단체법의 근로자는 일시적 실업자나 해고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선진국뿐 아니라 국내 노동법학계에서 통일된 의견이다. 따라서 해고자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해고를 남용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노조가 약화되며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5)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문제

▶ 날치기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여 이른바 협약체결권을 명시하였다.

▶ 이는 단체교섭결과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노조 내부의 민주적인 통제를 법률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것이다.

▶ 위임인이 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들은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대표의 권한만을 조합원들이 통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조치로서 사용자들이 조합을 어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6) 쟁의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규정의 신설

▶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이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한국에서 과연 쟁의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날치기법 더욱 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신설된 쟁의제한규정들 ;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 기타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는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특히 생산이나 주요업무 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장내의 쟁의를 크게 제한하고 근로자들을 사업장밖으로 내몰고 있다.

▶ 그렇지 않아도 쟁의권이 보장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처럼 수많은 제한을 덧붙일 경우 쟁의권은 아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할 때마다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쟁의를 하려면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7)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 날치기법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되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 현행법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임금을 2년 동안 끓어놓을 경우 근로자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날치기법은 임금협약의 효력을 연장하여 이제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분을 보전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도 결국은 노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개이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노동보호법(근로기준법)의 개악

날치기노동법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재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근로자들을 고용 불안으로 몰아넣는 정리해고조항을 명문화하고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근로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개악을 단행하였다.

(1) 정리해고제

▶ 날치기법은 정리해고제를 명문화하면서 그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해

고회피노력을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고일 60일전까지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게 하는 절차를 정하였다.

▶ 정부는 정리해고의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절차가 까다롭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절차적 성격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식품에 불과하다.

▶ 우선 정리해고의 사유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그 앞에 있는 ‘경영악화,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전환’ 등을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의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리해고의 사유를 이처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사용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정리해고될 각오를 해야 하고, 또 사용자가 언제,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이나 업종전환을 할 지 모르며 언제라도 그러한 구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들은 언제나 정리해고될 위험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사업의 양도·합병·인수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단해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금융노동자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금융고용조정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 근로자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회사에도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상황, 즉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도산할 정도의 긴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절차적 제한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만 하도록 한 것은 지극히 부족하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협의절차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

▶ 날치기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이름으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 이 제도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 이내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노사간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1월 이내의 변형근로시간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편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변형근로시간제는 1980년 전두환정권이 도입하였다가 폐단이 심각하여 1987년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1일 최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없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을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에 종사케 하여 생활리듬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그러지 않아도 세계최장 수준의 근로와 산업재해, 직업병, 과로사에 시달리

는 근로자들이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 정부는 선진국들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수준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작용이 겉잡을 수 없게 커질 것이다.

▶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낮은 임금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시간 활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는데도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이다.

▶ 정부는 노사간에 합의가 안되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로가 임금보전 차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사합의라는 절차는 전혀 의미를 갖기 힘들다.

▶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강변하나, 이를 강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어 위 조항은 장식에 불과하다. 또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3) 기타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개악조항들

날치기 노동법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근로기준법 제조) 노후보장적 의미를 갖는 퇴직금제도 자체와 퇴직금누진제를 무의미하게 하였고, 휴업급여를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소시켰고, 연월차 휴가의 대체를 인정하였다.

5. 맷음말

▶ 날치기 노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개악되는 반면, 노동조합은 존립기반마저 위협당하고 활동은 더욱 위축되게 될 것이다. 임금은 줄어들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과로사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다.

▶ 그러한 상황속에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산업평화나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도 없다.

▶ 그렇다면 국제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노동탄압국으로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결국 날치기 노동법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을 노예상태로 후퇴시키고 노동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재벌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반역사적인 법이다.